

심 사 보 고 서

1.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 무 위 원 회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제2대 구미시 의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회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력은 내무부에 증원 요청함과 동시에 본청 정원에서 우선적으로 6명을 의회사무국에 증원 시켰으며, 금회 신규로 증원되어 내려온 3명중 전문위원 6급 1명은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하고, 사무보조 2명은 본청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내무부에서 승인하여 증원시켜 주는 공무원수와 관계없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시 본청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 심사 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